AJ네트웍스	이사회 규정	규정구분	전사규정
		개 정 일	2021.12.21.
		규정번호	01-00-02-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AJ네트웍스㈜의 이사회(이하"이사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이사회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의장의 이사로서의 임기만료시까지 한다.

제3장 회의

제6조【개최】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되, 이사회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자】

1.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사유는 각 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해당임원이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해당 임원은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이사회 간사는 부의안건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의 지시를 받아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이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승인(보고)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3.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의 승인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공동대표의 결정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8)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10)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2)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4)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 또는 기존사업 철수(매출액 기준)
15)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
16)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 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단, 자금 운용 관련 투자차원의 유가증권 취득은 제외
17) 14)목 내지 16 목)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투자, 보증, 담보제공, 취득, 처분, 출자에 관한 금액이 당초에 승인한 것 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18)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승인 사항

4.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6) 자기주식의 소각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또는 상법 제 398 조에 규정된 자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상법 제 39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6.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사회 보고 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보고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2【전문가의 조력】

1. 의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간사】

1. 이사회에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경영관리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